



업무안내/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柳 銀 烈 / 선임연구원

1. 개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이하 “선용품등”이라 한다)은 「선박안전법(법률 제 3907호, 1986. 12. 31.)」 및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 826호, 1985. 11. 18.)」에 따라 항만청의 형식승인을 받아 선박용으로 제조, 판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약칭 FILK)는 1988년 3월 8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 등 방재관련분야의 선용품 10개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바, 이는 국내 손해보험업자들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15여년에 걸친 방재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설립된 방재시험소가 전문 방재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각종 관련 첨단 시험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등 국내 유일의 방재관련분야의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선용품등은 육상의 건물용과는 달리 해상의 선박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시험업무가 필요한 것이며 동 업무로 제조자가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극소화하여 손실경감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이다.

2. 형식승인 시험품목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서 방재시험소가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 시험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스프링클러 헤드
- (2) 자동확산형소화기
- (3) 포말소화기
- (4) 분말소화기
- (5) 탄산가스소화기
- (6) 포말소화약제
- (7) 분말소화제
- (8) 화재탐지기(감지기)
- (9) 방화문
- (10) 격벽 또는 갑판에 사용하는 방화용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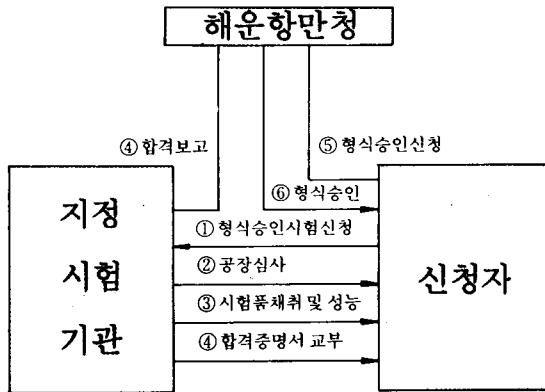
3. 형식승인시험 절차

- (1) 신청서류 접수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①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 ② 시험품의 제조사양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③ 시험품의 성능, 도면, 구조, 형상 및 재료와 그 사용법에 관한 설명서
- ④ 기타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업무흐름도



협조하여야 한다.

(3) 성능시험

성능시험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고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해운항만청장이 정한 성능시험기준(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검사기준 및 검정기준, 해운항만청 고시 84-2(84. 1. 5))에 따라 시험원이 실시한다.

성능시험을 위한 공시품은 가능한 한 공장심사의 시기에 시험원이 입회하여 채취하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지정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4) 형식승인

형식승인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고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 합격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해운항만청장에게는 성능시험성적서와 성능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합격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선용품등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신청서에

①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②선용품등의 성능, 도면, 구조, 형상 및 재료와 그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③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형식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

(2) 공장심사

성능시험을 하기 전에 지정시험기관은 제조사가 신청한 선용품을 계속하여 품질을 균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설비, 제조법, 품질관리, 검사조직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공장심사는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이 제조사 업장에 입회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①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현황과 제조능력
- ②각종 사내규격, 작업표준 및 품질관리의 확립과 그 실시현황
- ③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 현황
- ④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장심사는 가능한 한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간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의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자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공장심사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공에